

제주항공 사고 관련, B737-800 보유 항공사 및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'24년 12월 29일 발생한 “제주항공 여객기 사고”와 관련하여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기종(B737-800)을 보유(101대)한 6개 항공사*에 대한 특별안전점검('24.12.30~'25.1.10)과 전국 13개 공항**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('25.1.2~1.8)을 실시하였다.

* 제주항공(39), 티웨이항공(27), 진에어(19), 이스타항공(10), 에어인천(4), 대한항공(2)

** 전국 15개 공항 중 무안(사고발생 공항), 군산(미군 관리공항)은 자료조사로 대체

< 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>

-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B737-800 기종의 랜딩기어·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,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.
- 이번 점검결과,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·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다만, 일부 항공사에서 ①비행 전·후 점검주기 초과, ②결함해소절차 미준수, ③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.

< 위반사례 설명>

- ①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·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나, 약 2시간을 초과하여 점검한 사례 확인
- ②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 모두 교체해야 하나,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 확인
- ③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유무를 보고 받은 후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나, 일부 항공편에서 탑승사인 전 탑승 개시한 사례 확인

- 주요 개선사항으로 △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, △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, △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.

<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>

□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*에 대한 설치 위치, 재질,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.

* 방위각시설(LLZ), 활공각시설(GP), 거리측정시설(DME) 및 전방향표지시설(VOR)

○ 특별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,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○ 다만,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하여 총 7개 공항, 9개 시설*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(콘크리트 둔덕) 광주공항 1개소, 여수공항 1개소, 포항경주공항 1개소, 무안국제공항 1개소
(콘크리트 기초) 김해국제공항 2개소, 사천공항 2개소 / (H형 철골 구조) 제주국제공항 1개소

□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하여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,

○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하고,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 특히,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	책임자	과 장	강정현 (044-201-4259)
		담당자	사무관	이금주 (044-201-4312)
	항공안전정책관 항행위성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선우 (044-201-4356)
		담당자	사무관	양창생 (044-201-4357)